

# 中學校 高等學校 師範學校 施設基準令 “拔萃”

(4292年 4月 1日 公布)

제 3 조 제 3 항 도서실(施設義務規定)

제 7 조 3 학급까지는 300권이상의 도서를 비치해야하고 3 학급을 초과하는 3 학급마다 200권이상씩을 가산하여 비치하여야한다

## 同 附 則

제 2 조 본령 공포이후에 설립되는 학교는 그 설립 당초에 적어도 제 3 조 제 2 호 제 4 호 제 6 호와 제 12 조(但書除外)에 규정된 시설을 제외하고는 본령의 각 기준에 따라 교사 체육장 농장 연습림 어장등 지적시설 전부와 건물시설의 5분의 3이상이 건설되고 그 학교의 편성완성년도까지에 본령에 의한 시설이 완성될수 있어야한다

제 3 조 본령 공포일현재에 기존하는 학교로서 제 12 조에 규정된 시설을 제외하고는 본령 공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연도별 확충계획에 따라 본기준에 도달하도록 하여야한다

전항의 연도별 확충조치를 그때마다 소정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문교부장관은 학과의 통합 학급의 감축 학생모집의 정지등의 조치를 할수 있다

### “圖協月報”配付狀況

1. 會員圖書館 備置用	189部
1. 普通會員, 贊助會員, 名譽會員	199 "
1. 會員圖書館의 館長	160 "
1. 全國의 大學總長, 學長 및 圖書館이 있는 機關의 長	100 "
1. 國外機關(資料交換包含)	100 "
1. 言 論 界	100 "
1. 文教部 事務官以上	60 "
1. 全國 主要中高等學校 및 師範學校	600 "
1. 國會 文教委員會	20 "
1. 各道 文社局長 및 學務課長, 文政課長	27 "
1. 全國 教育研究所	13 "
1. 其 他	100 "
1. 協會 保管用	若干 "